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2022. 07. 01. 규정 제16호]

주무부서 : 사업지원팀

일부개정 : 2026.07.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케이엘워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회사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직원 및 관계수급인 노동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2. “근로자대표”란 직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직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3.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애 등의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뿐만 아니라 아차사고 등을 포함한다.
4.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5.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다

음 각 호의 중대재해를 모두 포함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경영방침) ① 사업주는 회사에 적합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예산·인력·제도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사업주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회사 내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 부서장은 매년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경영방침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매년 수립되는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재해예방 의무)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조치 여부 (연 1회 이상)
2.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및 시설·장비의 구비 여부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 평가 여부 (반기 1회 이상)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안전·보건에 관한 심의·의결 여부 (분기 1회 이상)
- ② 각 사업부서 및 각 영업점의 장은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본사의 각 사업부의 장과 각 점의 사업부의 장은 소속 부서의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
 2. 업무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수행
- ③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2. 위험성평가 수행사항 관리 등 안전보건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 수행
- ④ 근로자는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협조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 제6조(안전보건조직)** ① 회사는 본사 및 각 점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도록 한다.
- ② 본사 및 각 점에 관리감독자를 두어 해당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회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하여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 ④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원을 선임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사실에 관한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한다.
- ⑤ 회사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사항은 [별표 1]에 의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각 점(본점/코엑스점/서울드래곤시티점/부산롯데점)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 각 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26.07.23.>

③ 각 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팀 팀장 또는 파트장으로 선임한다. <개정

2026.07.23.>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제8조(관리감독자) ① 회사는 각 점에 부서의 장을 관리감독자로 두어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고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점의 파트마다 파트장, 시프트 매니저 중 1인 이상으로 임명하되 지점의 상황에 따라 반장 또는 팀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해당 부서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해야 한다.)

③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 시 야간에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추가 지정한다.

④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해당 작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회사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해당 작업에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에서 정하는 작업에서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점검
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작업시작 전 점검. 관리감독자가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회사에 보고한다.

9.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관리자) ① 회사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회사의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회사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회사가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⑤ 회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인원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회사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3. 각 부서장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회사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 참석 시간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소요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근로자대표, 대표이사, 안전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위임장 등 위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1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의 처리) ① 회사는 이 규정의 제12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였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②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4조(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계획수립 및 문서화) ① 안전관리자는 차기 연도에 실시할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을 당해 연도 말일(또는 매년 1월 말)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 제1항 안전·보건교육의 실행계획 수립 시 소방 교육(또는 가스·전기·교통 관련법)을 포함한다.

③ 안전·보건교육은 회사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이라 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④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은 교육 대상과 교육 시기에 따라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 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⑥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정기 안전보건교육) ① 회사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4]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5]과 같다.

③ 교육 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의 제14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채용 시 교육) ① 회사는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채용 시 교육의 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4]을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채용 시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5]과 같다.
- ③ 교육 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의 제14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① 회사는 작업 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 실시해야 하는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의 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4]을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5]과 같다.
- ③ 교육 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의 제14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특별 안전보건교육) ① 회사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의 라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특별교육의 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4]을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5]과 같다.
- ④ 교육 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의 제14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⑤ 특별교육을 한 경우에는 제16조(채용 시 교육)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물질안전보건교육)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 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 대상물질의 MSDS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5]에 해당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제20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 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무교육 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다.
- ③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 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4]을 따르고, 교육 내

용은 [별표5]와 같다.

제21조(안전보건교육강사) ① 사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2.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②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기록·보존)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5년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3조(안전보건계획수립 및 실행) 안전관리 부서장은 매년 1월 초에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한다.

제24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실무부서의 장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를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 부분은 문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 조절 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부분에는 덮개 또는 울 설치
- ② 실무부서의 장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는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 ③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해야 하며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없이 원상 복구한다.

제25조(전기설비 안전) ① 실무부서의 장은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실무부서의 장은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실무부서의 장은 전기설비의 고장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방지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하고 고장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확대 방지 및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각 부서에서는 공정별·작업별·설비별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이주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한다.

제27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회사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 감독자를 위험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9]에 따라 해당하는 물질의 최소기준량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위험물질 보관 장소에는 화기물질의 반입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취급 장소에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28조(작업중지) ①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① 사업장의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

자의 안전보건교육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의 형태, 색채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제30조(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① 안전관리자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해당작업에 대하여 작업 전 및 일상점검 시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기계·기구 장치의 청소·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위험물질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안전보건관계규정·기준·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9.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④ 점검자는 점검결과 불안정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해당부서를 통해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⑤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점검자는 즉시 당해 근로자에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⑥ 안전관리자는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 작업장 내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서 화기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화기작업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② 화기작업 이외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위험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③ 화기작업이나 일반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충적으로 병행하여 수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보충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④ 회사 실정에 적합한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제32조(교통재해 예방) ① 회사 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

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 회사 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를 지나가야 한다.

③ 종업원은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등에 관계법 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제33조(비상조치계획) ① 회사는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2.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5. 비상시 대피절차
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7. 사고발생 시 또는 비상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
8. 대피전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9. 비상대피 후,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③ 비상대비 및 대응내용에는 인근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대응, 홍보 방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34조(피난 및 대응훈련) ① 회사는 원청업체에서 실시하는 계획에 따라 피난 및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②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는 시나리오별로 비상조치계획에 포함한다.

제35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① 회사는 비상사태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체계는 회사 내부뿐만이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36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 전 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 ② 근로자는 회사가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의 최종의견을 토대로 이행한다.
- ⑤ 제4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⑥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대상 및 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7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실무부서의 장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근로자는 대상 작업에 따라 회사에서 제공받은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③ 보호구를 착용해야 할 대상 작업 및 보호구의 종류 등 세부 사항은 [별표 2]에 의한다.

제38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① 실무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라 MSDS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MSDS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어야 하고, MSDS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이 MSDS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② 실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MSDS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③ 작업장에서 대상화학물질을 소분하여 사용하는 경우 소분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매 2년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정사항을 점검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최신본을 수령하여 게시하도록 한다.

⑤ 회사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39조(근골격계질환 예방) ① 회사는 사업장 내 전체 공정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③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④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스트레칭 및 휴식시간을 준수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40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회사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회사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② 회사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2조(헬스케어센터 운영) ① 회사는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헬스케어센터를 운영하고 간호사를 배치하여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질병치료 등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한다.

② 회사는 헬스케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예산, 장비 등을 지원한다.

제43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회사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44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회사는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시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별표 3]의 근로자 행동요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사실을 알게 된 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사고 발생 위험이 제거될 때까지 해당 작업을 중지하거나 해당 장소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사고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① 안전관리자는 사고 발생의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관련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안전담당부서에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자는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

제7장 위험성평가

제46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① 회사는 매년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대책 수립 이행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위험성평가 수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47조(위험성평가 교육) ① 회사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 위험성평가의 목적, 평가 방법, 평가 절차, 각 구성원의 역할 등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담당자 및 관계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회사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정기교육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8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회사는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의 세부 방법은 별도의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의한다.

③ 위험성평가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본 규정 제50조를 참조하여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해 기록을 유지한다.

제49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50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회사는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5.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토록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 보존한다.

제8장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51조(도급의 제한) ① 회사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노동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따른 작업을 도급할 수 있다.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회사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지케이엘워드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회사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8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제28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제53조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제53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사업을 도급하는 실무부서의 장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지케이엘워드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여부 확인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을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지케이엘위드가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 7호에 따른 확인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54조(도급사업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도급사업 협의체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계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수급인은 상시 작업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작업하는 일시·간헐적 업체는 제외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작업의 시작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지케이엘위드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제55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① 도급작업 관리감독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지케이엘위드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노동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이 규정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

② 도급작업 관리감독자는 관계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작업의 중지사유 및 중지기간을 통지한 후 해당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56조(포상) ① 회사는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회사의 관계 규정에 의한다.

제57조(징계) ① 회사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1항의 사항으로 징계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참여하도록 한다.

제58조(문서보존연한) ① 안전보건에 관한 문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존연한에 따라 보관하도록 한다.

제59조(변경절차) ① 안전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회사의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 에 게시하거나 갖추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60조(준수) ①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 할 수 있다.

부 칙(2022. 07. 01.)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2. 7.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02.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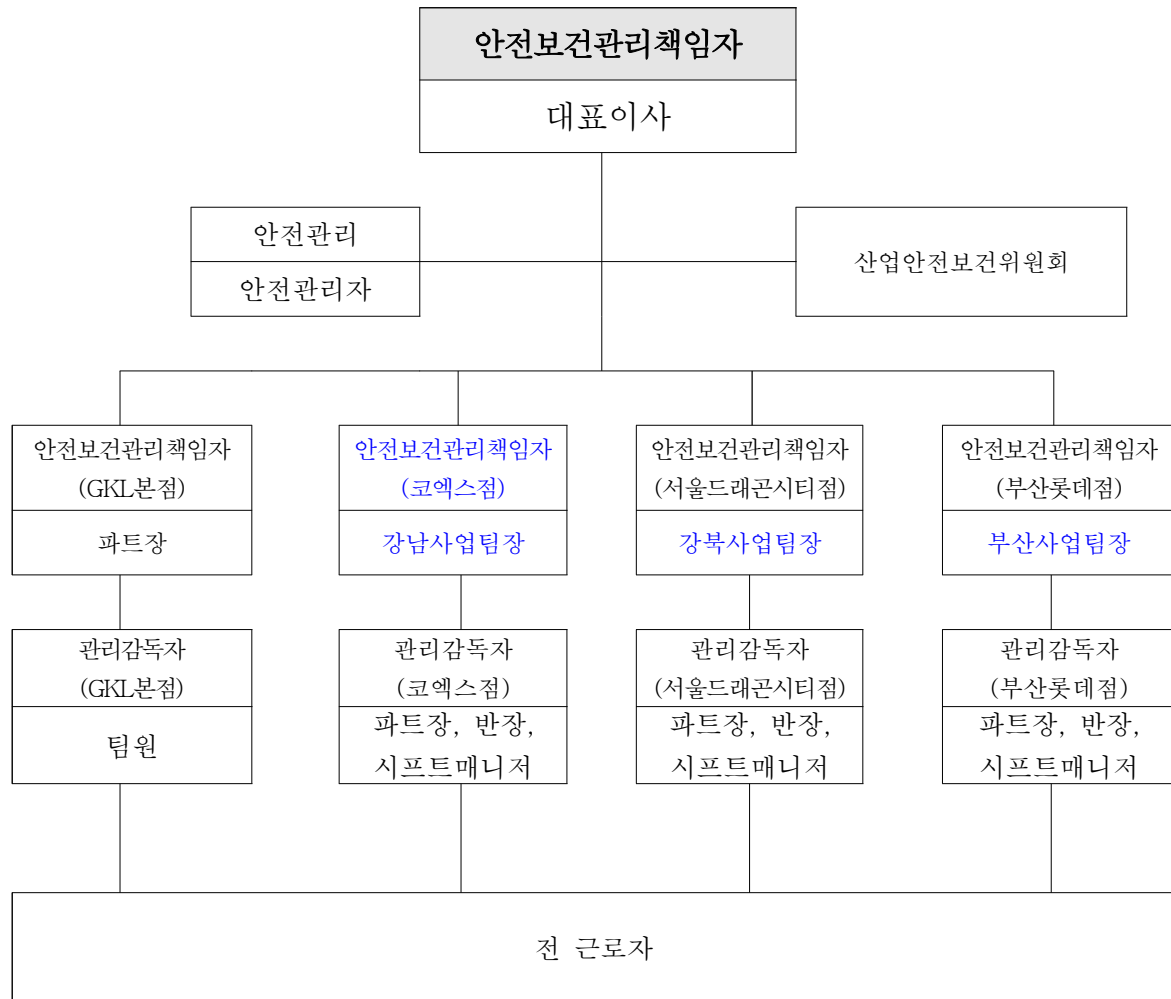
부 칙(2025. 07. 0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07.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보건 조직도 <개정 2026.07.23.>



[별표 2] 보호구를 착용해야 할 대상 작업 및 보호구의 종류

대상 작업	보호구 종류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예시) 사다리/리프트 사용 작업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예시) 전기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절연기능이 있는 안전모, 안전화, 장갑
용접 작업	보안면(또는 보안경, 마스크), 장갑
물체가 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예시) 드릴링 작업, 분진 발생 장소에서의 작업 등	보안경, 마스크
고열에 의한 화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 예시) 주방 내 화구 취급 시	장갑, 앞치마
미끄럼 위험이 있는 장소 예시) 주방 내 등	미끄럼 방지기능이 있는 안전화
냉동고 내 작업, 겨울철 외부 작업	방한복
밀폐공간 내 작업 예시) 저수조, 침전조 내 장소 등	송기마스크
유해물질 취급 작업	마스크, 보호의, 장갑 *취급 물질에 따라 MSDS상의 정보 확인

[별표 3]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